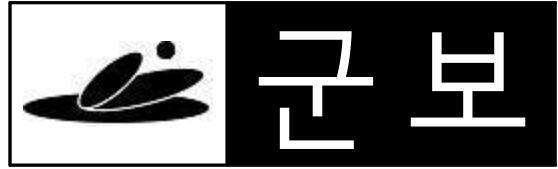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696호 2023. 3. 15.(수)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544호 :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예 규

- 예산군 예규 제31호 :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일부 개정예규 7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32-68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
- 예산군 고시 제2023-69호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3

입법예고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3호 :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예산군 공고 제2023-490호 :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회 람									
--------	--	--	--	--	--	--	--	--	--

제1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3월 15일

예산군 규칙 제1544호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가목 중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7 제1호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 이 터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 별표 5(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을 통해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및 시험 시행 시 공정성 및 통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안 제8조)
 - 20세 이상 → 18세 이상 (8급이하 시험응시가능 연령과 동일)
-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직렬별 자격증 요건 정비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적용 직렬에 ‘전산직렬’ 및 대상 자격증 신설 (안 별표 4)
 -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 응시자격증이 필요한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렬’ 삭제 및 해양수산 등 4개 직렬(8개 직류)에 응시자격증 추가 (안 별표 5)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산직렬의 자격증 종류 정비 (안 별표 7)
 - 타 직류와 형평성을 고려해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분석기사’ 추가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3월 15일

예산군 예규 제31호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

제명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를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지침”으로 한다.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실장(이하“소송총괄부서””를 “기획실장(이하 “소송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송무지휘”를 “송무 지휘”로, “요청한 경우”를 “요청하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체 없이”를 “바로”로, “등” 이”를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바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소송수행 방침결정)”을 “(소송수행 방침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관계”를 “선임 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판결이유”를 “판결 이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건개요”를 “사건 개요”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서증”을 “서증(書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검찰청(또는 법무부)에”를 “법무부장관에게”로, “검찰청(또는 법무부)의”를 “법무부장관의”로 한다.

4.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소송종결보고

④ 제4항에 따라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소송종결보고를 하고자 하는 행정소송 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사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제기여부”를 “소송제기 여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으면”으로, “소송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을 “소송비용을 회수하였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부기간”을 “납부 기간”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하고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를 “내지 아니할 때는 독촉하고 독촉 기한이 지나도 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않은 경우”를 “않으면”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결”을 “재결(裁決)”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시행령」 제6조, 제10조가 개정됨[2020.8.5.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소송 수행의 승인·지휘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규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예규」
 - (변경) 「예산군 소송사무 등 처리 지침」
- 사전지휘 요청 대상 현행화(안 제10조)
 - (현행) 검찰청(또는 법무부) → (개정)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 해태를 줄이기 위하여 소송사무 보고 및 지휘 사무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소송진행상황보고 및 소송종결보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함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예산군 고시 제2023-68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예산군수

1. 노선지정(변경)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m)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신암면	면도	오신선	신암102	오산리 469-5	용궁리 789-9	3.71	조곡리 예림리	10.0	6.0	군도15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변경 (편입면적 215㎡) (제척면적 433㎡)
대흥면	면도	동건선	대흥101	동서리 218-3	교촌리 728-4	2.20	동서리 교촌리	6.5 ~ 8.0	3.0 ~ 6.5	도로개설 현황 반영에 따른 노선변경 (제척면적 12㎡)

2. 노선지정(변경)사유 : 농어촌도로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군 건설교통과(041-339-7673)

6. 지형도면 공람 : 토지이음(<http://www.eum.go.kr>)

7.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건설교통과)

8.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예산군청 건설교통과(041-339-767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오신선(신암102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2,796	1,932	감) 218	1,714						
1	용궁리	789-9	도	717	-	증) 215	215	예산군					
2	용궁리	784-2	도	2,079	1,932	감) 433	1,499	예산군					

■ 동건선(대흥101호선)

- 해당사항 없음
- 사유 : 대흥면 교촌리 산7-107번지는 금회 폐지되는 토지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 계				2,796	1,932	감) 218	1,714						
1	교촌리	산7-107	임	223	12	감) 12	0	강○용					

예산군 고시 제2023-69호**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 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33-24	군계획시설 (소매시장)	건축 1식 (765㎡)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군계획시설(소매시장)사업 : 2023. 3. 15. ~ 2024.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토 지)

지역: 예산읍 예산리

구분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지분율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333-24	대	765	765	박옥선	예산군 예산읍 교남길 56	10/13048	-	-	-	-
2					오규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2길 22, 110동 702호	132/13048	-	-	-	-
3					이용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43, 103동 603호	54/13048	-	-	-	-
4					전상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5 펜타포트 102동 3002호	92/13048	-	-	-	-
5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1270/13048	-	-	-	-
소 계			765	765	-	-	-	-	-	-	

(지장물)

지역: 예산읍 예산리

연번	지번	지목	종류	면적(㎡)		건축물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공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및 명칭	주소	지 분	성명 및 명칭	주소	
계				786	786						
1	333-24	대	건물(아1호)	16	16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	-	-
2			건물(아2호)	16	16			-	-	-	-
3			건물(아3호)	9	9			-	-	-	-
4			건물(아4호)	9	9			-	-	-	-
5			건물(아5호)	9	9			-	-	-	-
6			건물(아6호)	9	9			-	-	-	-
7			건물(아7호)	9	9			-	-	-	-
8			건물(아8호)	9	9			-	-	-	-
9			건물(아9호)	9	9			-	-	-	-
10			건물(아10호)	9	9			-	-	-	-
11			건물(아11호)	9	9			-	-	-	-

12		건물(아12호)	9	9			-	-	-	-	
13		건물(아13호)	9	9			-	-	-	-	
14		건물(아14호)	9	9			-	-	-	-	
15		건물(아15호)	16	16			-	-	-	-	
16		건물(아16호)	16	16			-	-	-	-	
17		건물(아17호)	9	9			-	-	-	-	
18		건물(아18호)	9	9			-	-	-	-	
19		건물(아19호)	9	9			-	-	-	-	
20		건물(아20호)	9	9			-	-	-	-	
21		건물(아21호)	9	9			-	-	-	-	
22		건물(22호)	9	9			-	-	-	-	
23		건물(아23호)	9	9			-	-	-	-	
24		건물(아24호)	9	9			-	-	-	-	
25		건물(아25호)	9	9			-	-	-	-	
26		건물(아26호)	9	9			-	-	-	-	
27		건물(아27호)	9	9			-	-	-	-	
28		건물(아28호)	9	9			-	-	-	-	
29					8	김상례	예산읍 아리랑로 93-10, 세광아파트 106동 303	784/31506	-	-	-
30					10	박성옥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34	1015/31506	-	-	-
31					10	윤용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6번길 32-9	1015/31506	-	-	-
32					6	이봉덕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84	587/31506	-	-	-
33					7	이종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34, 가동 207호	653/31506	-	-	-
34		건물(아29호)	315		11	전상진	천안시 서북구 공월로 195 펜타포트 102동 3002호	1097/31506	-	-	-
35					9	정옥순	예산군 신암면 대덕남길 70-6	893/31506	-	-	-
36					10	차준식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3, 208동 210호	1015/31506	-	-	-
37					5	최길순	예산군 예산읍 신흥길 66-2	548/31506	-	-	-
38					10	최춘옥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195, 306동 210호 (중동, 설악단지)	1015/31506	-	-	-
39					229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2884/31506	-	-	-
40		점포	35	35				-	-	-	
41		점포	21	21				-	-	-	
42		점포	42	42				-	-	-	
43		점포	20	20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	-	
44		점포	21	21				-	-	-	
45		점포	42	42				-	-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 3호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예 산 군 수

1. 조례(규칙)명 :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식물방역법 및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의거 과수화상병 전국 3회 사전방제 의무에 따라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화상병의 효율적 방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해충 방제 협의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 및 방제관련 사항 심의

- 제8조 : 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제9조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위촉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5. ~ 4. 4.(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 단체는 2023년 4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우편번호 : 32418)
- 전자메일 : plantculter@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8165, 팩스: 041)339-8159

라. 제출방법 : 우편, 메일, 전화, 팩스(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를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병해충”으로 한다.

제3조 중 “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을 “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중 “총괄대책반 :”을 “총괄대책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예찰·방제반 :”을 “예찰·방제반:”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행정지원반 :”을 “행정지원반:”으로, “읍면”을 “읍·면”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림지원반 :”을 “산림지원반:”으로 한다.

제7조 중 “ 「식물방역법」 제31조의2”를 “ 「식물방역법」 제31조의2”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분석
2.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 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8조)제4항 중 “예찰·방제활동”을 “예찰·방제 활동”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9조) 중 “활용기술”을 “활용 기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제1조(목적) --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 ----- -----

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예산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2. (생략)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

제2조(정의) -----
-----.

1. ----- 병
해충-----

-----.

2.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
-----는 「식물방역법」 제31조
의4제2항-----

-----.

제4조(구성) -----

-----.

1.·2. (현행과 같음)

3. -----

포함한다.

가.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및 읍면 산업팀장

라. 산림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산림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팀장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예산군에 두며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식물방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신 설>

-----.

가. 총괄대책반: -----

--

나. 예찰·방제반: -----

다. 행정지원반: -----

----- 읍·면 -----

라. 산림지원반: -----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

제8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신 설>

병해충 예찰·방제협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분석

2.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
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
내의 위원

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
원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신 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 ③ (생 략)

④ 병해충 예찰·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 식물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전문인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예찰·방제 활동-----
-----.

제14조(전문교육) -----

- 활용 기술-----
-----.

제1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신 설>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붙임 3】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 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예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3-490호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2. 제안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 마. 관계기관등의 협조(안 제6조)
- 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안 제7조)
- 사. 협의회 기능(안 제8조)
- 아. 협의회 구성 등(안 제9조)
- 자.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 등(안 제10조~제11조)
- 차. 분과위원회(안 제12조)
- 카.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안 제13조~제14조)
- 타. 수당 등(안 제15조)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5. ~ 4. 3.(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안전관리과(참조 : 안전관리팀
☎041-339-7753, FAX : 041-339-77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 전자메일 : lioil45@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753, fax : (041)339-775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 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 담당국장
2. 예산경찰서장
3.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예산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에서 교체·전보 등으로 그 직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